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부적정(4급 기구)

기 관 명 전라남도, 여수시

내 용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는 구체적 요건으로서 ①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②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여수시의 '도시시설사업단'은 법령상 설치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업소 설치 부적정 내역 >

지자체명	기구명	부서명	정원	비고
전남 여수	도시시설사업단 (4급)	소계	72	
		도시재생과(5급)		
		공영개발과(5급)		
		도로시설관리과(5급)		
		공원과(5급)		

여수시 도시시설사업단은 최초 설치 당시 도심개발사업과 산단조성개발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업소로 분리되면서 주로 도심정비, 경관조성, 교통시설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점차 본청으로부터 정책기능이 이관되어 조직규모가 확대되었다.

(1) 사업소의 정책기능 수행

그런데 현재 해당 사업소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 상당 부분은 본청에서 수행되어야 할 정책기능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재생사업 지구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총괄’, ‘옥외광고물 전반에 관한 업무 및 처리’,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공원조성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은 본청의 부서에서 조직내 정책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기능으로서 정책 여건에 대한 분석, 행정수요의 조사, 주민여론의 수렴, 중앙부처-시·도와의 업무 조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시설물 관리 등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도로관리팀, 오동도관리팀 등)도 존재하여 사업소 내 정책기능-집행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

또한, 시 본청에 ‘산업지원과’, ‘도시미화과’, ‘산림과’, ‘도로과’ 등 부서가 해당 사업소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본청 부서와 사업소의 업무분장이 정책기능-집행기능을 기준으로 분장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직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부서간 낮은 연계성·통합성

사업소 부서간 기능적 측면에서 연계성·통합성이 하나의 사업소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지적되었다. 본청의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각기 다른 국(기획경제국·관광문화교육국·환경복지국·건설교통국)에 배치되어 있는데, 도시시설사업단 내 4개 부서는 하나의 사업단 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특정 현장이나 특정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설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데, 각 부서의 업무·기능 검토 결과 일부 연계 가능성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여수시 전반의 행정수요를 대응하고 있어 부득이 통합하여 4급 사업소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 또한 발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4급 기구를 별도 설치하여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보고체계, 통솔범위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우려가 있으며, 이는 법령상 규정된 사업소의 설치 요건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결 론]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분석 결과, 여수시의 4급 사업소장 설치·운영 실태가 법령상 사업소 설치 요건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도시시설사업단(4급)은 정책기능을 본청으로 분리·이관하여 해당 사업소를 폐지하고, 일부 현장성이 높은 집행기능(시설물 관리 등)을 수행하는 5·6급 사업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법령상 사업소 설치·운영 규정 준수와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관리의 건전성을 위하여 여수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여수시장께서는

법령상 사업소 설치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 사업소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 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고, 동 규정 별표2의3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과장·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두되, 시나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군의 경우에는 소장은 4급, 과장·담당관은 5급,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군의 경우에는 5급)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그러나 전라남도 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구 및 정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신안군의 경우 제16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농촌진흥기구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서(공원녹지과, 뮤지엄파크지원과)를 설치하는 등 상기 법령을 위반하였다.

2) 또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신안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정 관련 부서 통폐합시 '해당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만 복수직렬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무관한 과에 대하여 일반직·지도직 복수직렬을 책정하고 있으며, 보성군, 함평군, 영광군의 경우 본청 농정부서와 통합하지 않았음에도 하부 과장직위에 일반직·지도직 복수직렬을 책정하는 등 부적정 운영하였다.

3) 그리고 광양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의 경우 과장이 될 수 없는 농업연구관을 과장 직위에 정원 책정하여 상기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법령에 부합하도록 직급 재책정 등 개선이 요구된다.

4) 아울러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의 경우 본청 농정부서와 통합과 관계 없이 농업기술센터 과장직위 정원에는 농촌지도관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일부 이를 누락하였기에 상기 법령을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 붙임)

조치할 사항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신안군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사무 및 과장의 정원이 법령에 맞게 책정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관리 부적정 사례 >

명칭 (설치일)	소장·부서장 직급·직렬			개편방향	비고
	직위	정원	현원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57.6.1.)	센터장	행정4·기술4·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07.5월 기구개편으로 본청 농업축산과와 통합
	농업정책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		
	농촌진흥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미래농업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99.2.12.)	센터장	행정4·기술4·농촌지도관	행정4		'18.12월 기구개편으로 본청 친환경농축산과, 경제진흥과와 통합
	농업정책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		
	친환경농업과장	행정5·농업5·녹지5·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농식품유통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		
	동물자원과장	행정5·농업5·수의5	행정5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95.1.1.)	기술보급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04.1월 기구개편으로 본청 농산과, 식산과와 통합
	센터장	행정4·기술4·농촌지도관	서기관		
	농업정책과장	행정5·농업5	농업5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배원예유통과장	행정5·농업5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먹거리계획과장	행정5·농업5	행정6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축산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		
	농촌진흥과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양호)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98.10.12.)	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양호)	'99.7월 기구개편으로 본청 농업부서와 통합
	센터장	행정4·기술4·농촌지도관	기술4		
	농업지원과장	행정5·농업5	행정5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농산물마케팅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	행정5	농업연구관 과장 정원 책정 부적정 → 연구관 삭제	
	매실원예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		
	산림소득과장	행정5·농업5·녹지5	행정5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기술보급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	농업5	①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② 농업연구관 삭제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98.9.2.)	센터장	농촌지도관·농업연구관	농촌연구관	농업연구관 과장 정원 책정 부적정 → 지도관 단수	본청 농정부서와 미통합
	미래농업연구과장	농촌지도관·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 과장 정원 책정 부적정 → 지도관 단수	
	경영지원과장	농촌지도관·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 과장 정원 책정 부적정 → 지도관 단수	

명칭 (설치일)	소장·부서장 직급·직렬			개편방향	비고
	직위	정원	현원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99.1.11.)	센터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본청 농정부서와 미통합
	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관·농업5	농업5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62.4.1.)	센터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본청 농정부서와 미통합
	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관·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 과장 정원 책정 부적정 → 지도관 단수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57.3.11.)	센터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본청 농정부서와 미통합
	농업기술담당관	농촌지도관·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 과장 정원 책정 부적정 → 지도관 단수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62.3.21.)	센터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본청 농정부서와 미통합
	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연구개발과장	농촌지도관·농업연구관	농촌지도관	농업연구관 과장 정원 책정 부적정 → 지도관 단수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69.1.1.)	센터장	농촌지도관	행정5		'03.9월 기구개편으로 본청 농정과와 통합
	농정과장	행정5·농업5	농업5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농촌지원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친환경농업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		
	축산과장	행정5·농업5·수의5	행정5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98.8.25.)	센터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본청 농정부서와 미통합
	기술보급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영농지원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67.7.1.)	센터장	농촌지도관	농업5		본청 농정부서와 미통합
	농업개발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행정5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69.1.1.)	기술보급과장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19.12월 기구개편으로 본청 친환경농업과와 통합
	센터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농촌진흥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기술보급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친환경농업과장	행정5·농업5·수의5· 농촌지도관	농업6		
	농업기계화과장	행정5·농업5·시설5· 농촌지도관	행정5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공원녹지과장	행정5·녹지5·수산5·시설5	행정5	농업행정과 무관한 부서 → 본청 이관	
	뮤지엄파크 지원과장	행정5·농업5·녹지5·시설5	행정5	농업행정과 무관한 부서 → 본청 이관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농촌지도직공무원 정·현원 운영 부적정

기관명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영광군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진흥법」 제32조에 의하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두는 지도직공무원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농촌지도·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 외의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 여수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지도관, 지도사)을 읍·면·동장,과장급 직위 등에 정원을 책정하거나 현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농촌지도직공무원 정·현원 운영 부적정 사례 >

지자체명	직위	읍면동장 직급		비고
		정원	현원	
목포시	공원녹지과장	행정·녹지·시설5급, <u>농촌지도관</u>	행정5급	
	소라면장	행정·복지·농업5급, <u>농촌지도관</u>	행정5급	
	소라면 산업팀장	행정·농업·녹지6급, <u>농촌지도사</u>	<u>농촌지도사</u>	
	율촌면장	행정·농업·환경5급, <u>농촌지도관</u>	전산6급	
	율촌면 산업팀장	행정·농업6급, <u>농촌지도사</u>	<u>농촌지도사</u>	
여수시	화양면장	행정·농업·녹지5급, <u>농촌지도관</u>	행정5급	
	음식관광팀장	행정·보건6급, <u>농촌지도사</u>	<u>농촌지도사</u>	
	승주읍 산업팀장	행정·농업7급, <u>농촌지도사</u>	<u>농촌지도사</u>	
	낙안면 산업팀장	행정·농업6급, <u>농촌지도사</u>	<u>농촌지도사</u>	
	황전면 산업팀장	행정·농업6급, <u>농촌지도사</u>	<u>농촌지도사</u>	
순천시	서면 산업팀장	행정·농업6급, <u>농촌지도사</u>	<u>농촌지도사</u>	
	농정과장	농업5급, <u>농촌지도관</u>	농업 5급	
	유통축산과장	행정·농업5급, <u>농촌지도관</u>	행정 5급	
	모량면장	행정·농업·녹지·시설5급	<u>농촌지도관</u>	
영광군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영광군수께서는

농촌지도직공무원과 관련한 정원 책정 및 현원 배치 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직공무원의 복무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정안전부

개선권고

제 목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효율화 도모 노력 미흡

기 관 명 여수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효율화 및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기능에서 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 기능·인력 재배치 기준 >

- ① (기능) 지원기능, 쇠퇴기능에서 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으로 재배치

* 예시 : 도시개발·산단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 지역별 특화 역점과제·국제행사 등 지역현안 분야, 주요 국정과제 또는 법령에 따른 신규 인력소요 분야

- ② (현장) 본청 또는 감독부서에서 옵면동, 일선 서비스 현장으로 재배치

- ③ (서비스 편차) 인력 부족으로 안전·복지 등 행정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현업부서 또는 옵면동으로 재배치

- ④ (근로시간) 공직내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적정 배치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에 따라, 일반적 정원의 1% 이상을 재배치 대상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재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속해서 2년 이상 목표치 미만 실적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여수시장, 나주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 분야의 인력을 일선 현장 및 신규 핵심사업 분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붙임】

< 기농·인력 재배치 미흡 사례 >

연번	지자체명	재배치 달성을(%)			비고
		'17년	'18년	'19년	
1	여수시	1.40	-	-	2년이상 목표치 미만
2	나주시	-	-	-	"
3	담양군	-	-	-	"
4	곡성군	-	-	-	"
5	구례군	-	-	-	"
6	고흥군	1.40	-	-	"
7	보성군	-	-	-	"
8	화순군	-	-	-	"
9	장흥군	-	-	-	"
10	강진군	-	-	-	"
11	해남군	1.10	-	-	"
12	영암군	-	-	-	"
13	무안군	2.30	-	-	"
14	함평군	-	-	-	"
15	영광군	-	-	-	"
16	장성군	-	-	-	"
17	완도군	-	-	-	"
18	진도군	-	-	-	"
19	신안군	-	-	-	"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15.9월)」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6~'20년)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세부 정비방안으로는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 후 실효성·안전 특성 등에 따라 위원회 폐지, 협의체 전환 등을 실시(조례 등 근거규정 개정·폐지 포함)할 것을 안내하였다.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4.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
 5. 비상설화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 * 사실상 비상설 운영하는 경우(위원 미구성 포함)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비상설 운영 명시 필요
※ 조문(예시) :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해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및 산하 시·군에 대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령상 임의 설치가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기와 같이 정비하여야 하나, 일부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상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부합하도록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불임】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

지자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임의)	조례 등	
전라남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자문위원회	○		12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심의위원회 및 시장 분쟁조정 위원회	○		13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		14
	도로노선조정위원회	○		4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		19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		15
목포시	지하수 관리위원회	○		14
	면책심의위원회	○		5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		5
	설계자문위원회	○		100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		10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11
	조각작품 심의위원회	○		0
	관광진흥위원회	○		2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위원회	○		7
	교통 대책 위원회	○		9
	교통 안전 대책 위원회	○		11
	제안심사위원회	○		11
	예산성과 금실사 위원회	○		10
	규제 개혁 위원회	○		26
	경로당 운영위원회	○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		12
	시사편찬위원회	○		0
	문화 예술회관 운영 자문위원회	○		12
	의료관광자문위원회	○		12
	현혈 추진위원회	○		10
	안전 관리 민관 협력 위원회	○		20
	정책 자문위원회	○		39
	목포 자연사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	○		13
	갈등 관리 심의위원회	○		11
	시민 소통위원회	○		33
	장의 심의위원회 장의 위원회	○		0
	소비자 정책 위원회	○		0
	투자 유치 위원회	○		0
	지역 상권 발전 심의위원회	○		15
	지식산업 클러스터 협의회	○		16

여수시	면책심의위원회		○	7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	16
	지역경제협의회		○	19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1
	에너지위원회		○	12
	기업지원대책위원회		○	10
	공유축진위원회		○	11
	여수시무장애도시실무위원회		○	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		○	5
	마리나자문위원회		○	14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	10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	20
	택시자문위원회		○	13
순천시	헬스튜어협의회		○	10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	19
	안전관리자문단	○		18
	한옥위원회		○	7
	상권활성화협의회		○	13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	9
	향토유적위원회		○	11
나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20
	역사적인물선양사업위원회		○	0
	천연염색공방운영위원회		○	9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	15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19
광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0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	14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	12
	어르신행복도시자문위원회		○	9
	체육진흥협의회	○		9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21
	CCTV운영협의회	○		13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	16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20
	공중목욕장운영위원회		○	9
	식생활교육위원회		○	18
	물재이용관리위원회		○	13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		○	9
	교통안전정책심의회		○	9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20
곡성군	군정평가위원회	○		8

곡성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	10
	정보공개심의회	○		7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4
	체육진흥협의위원회		○	14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		18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13
구례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	9
	노인복지대책심의위원회		○	9
	구례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	6
	공간정보위원회		○	8
	청년정책위원회		○	12
	인구정책위원회		○	15
	친환경농업육성발전위원회		○	15
	산수유 보호·육성 관리위원회		○	13
고흥군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	12
	규제개혁위원회		○	12
	기록물평가심의회	○		0
	보안심사위원회	○		23
	농업발전을위한민관협의회		○	23
	유자육성위원회		○	15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9
	투자유치심의위원회	○		11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15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5
	부실공사방지위원회		○	7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	8
보성군	감사위원회		○	7
	금고지정심의위원회		○	9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7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5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	4
	전남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	8
화순군	건설사업종합기획단		○	16
	화순군남북교류 협력추진위원회		○	15
	읍면지편찬위원회		○	16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2
	친환경도시농업위원회		○	8
장흥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	0
	기록물평가심의회		○	6
	정보화위원회		○	15
	교육환경개선위원회		○	1
	공간정보심의위원회		○	8

장흥군	안전 관리민관협력위원회	○	5
	계약심의위원회	○	11
	천관문화관운영위원회	○	7
	자원봉사발전위원회	○	15
	노인복지관운영위원회	○	9
	노인일자리위원회	○	3
	물가대책위원회	○	16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	○	14
	환경위원회	○	10
	장흥한우육성위원회	○	10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9
	노사민정위원회	○	15
	화물공영차고지운영위원회	○	7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	13
	평생학습추진위원회	○	9
해남군	관광진흥협의회	○	11
	청년정책위원회	○	16
	양성평등위원회	○	12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	6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	10
	정보화위원회	○	7
	노사민정협의회	○	15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	○	9
	월출산로프웨이설치추진위원회	○	30
	교통안전대책위원회	○	1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	13
	항토문화유산위원회	○	30
	체육진흥협의회	○	15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2
	지방청소년위원회	○	14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	7
	안전관리실무위원회	○	15
	지적재조사위원회	○	3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	14
무안군	한옥위원회	○	9
	후생복지운영협의회	○	13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8
	유통분쟁조정위원회	○	11
	투자유치위원회	○	7
	노사민정협의회	○	10
	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	○	12
재해지도 작성 자문위원회	○	9	

무안군	조생양파초 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		○	15
함평군	교통 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3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0
	함평천지한우육성위원회		○	10
	교육환경 발전위원회		○	11
	노사민정협의회	○		13
영광군	군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	10
	돌가대책심의위원회	○		0
	적극행정면책위원회		○	5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	9
	기록물평가심의회	○		5
	명문고육성위원회		○	0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9
	노사민정위원회	○		12
	소상공인지원위원회		○	10
	여성농어업인정책심의위원회		○	9
장성군	환경위원회		○	1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16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	12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4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8
	경관위원회	○		20
	청소년위원회		○	12
	노사민정협의회	○		13
	필암서원유물전시관 운영위원회		○	10
	인구정책위원회		○	20
완도군	한옥위원회		○	7
	체육진흥협의회	○		13
	쇼핑몰위원회		○	7
	진도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	10
진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0
	공동위원회	○		17
	노사민정협의회		○	15
	돌가대책위원회		○	15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	8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	6
	체납정리위원회		○	0
신안군	보안심사위원회		○	5
	자체평가위원회	○		10
	규제개혁위원회		○	12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		15
	성희룡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4

행정안전부

개선권고

제 목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기 관 명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용계획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인력운용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동 규정 제4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제출 대상·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9~'20년)을 통해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매년 12월)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조직 운영토록 안내한 바 있다.

❖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 (「기구정원 규정」 제40조 및 '19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편집)

-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전라남도 및 산하 시·군에 대한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목포시·여수시·순천시·나주시·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등이 상기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였다.(위반사항 : 붙임)

이에 전라남도 산하 시·군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보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내실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불일】

< 기구 및 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위반여부 확인 >

구 분	전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제출 (목표치는 없음)	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제출	미제출 (간담회시 설명)	미제출 미제출 (조례 개정안)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제출	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체진단 결과	제출 (자체진단 실시)	미제출	미제출 (매뉴얼에 따른 자체 진단)	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제출 (18.1월까지 한시기구 있었음)	미제출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제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제출	-	-	-	-	-

구 분	전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제출 (민간위탁은 보고 안됨)	제출 (인건비 현황 및 민간위탁은 보고 안됨)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제출 미제출
⑧중기기본인력계획 1.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2.신규인력 증원분야와 감축분야 및 그내용 3.인건비 현황 4.민간위탁	중기기본인력계획에 '기구 및 정원운영 현황 보고(II기구· 정원 운영 현황(기구 정원 현황 및 변동 내역, 조직진단 결과, 인력효율화 및 재 배치,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 III. 기 타사항(한시기구정원, 전문임기제)'를 포함 하여 제출)	의회와의 개최(18.10.17, 19.10.16)	간담회 점검서에 “실적 없음” 표시	민선7기 조직개편안(18.12.20) 표시	점검서에 “실적 없음” 표시	

구 분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미제출	제출 (목표치 미제시, 조직개편 내역 정리 정도, 기구 및 정원운영 현황)	미제출 (기능인력 재배치 개요, 조직개편 계획 정도)	미제출 (기능인력 재배치 개요, 조직개편 내역 요약 정도)	미제출 (기능인력 재배치 개요)	미제출 (기능인력 재배치 개요)
② 기구·정원 증설 내역	미제출	제출 (기구 및 정원운영현황)	제출 (기구 및 정원운영현황)	제출 (기구 및 정원운영현황)	제출 (기구 및 정원운영현황)	제출 (기구 및 정원운영현황)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미제출	제출 (기구 및 정원운영현황)	제출 (기구 및 정원운영현황)	제출 (기구 및 정원운영현황)	제출 (기구 및 정원운영현황)	제출 (기구 및 정원운영현황)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지침단체 자체진단 결과	미제출	미제출 (조직개편 내역 정리 정도)	미제출	미제출	제출 (행안부 진단 결과)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제출 (운영중, 20.9.1부터)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구 분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⑦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	-	-	-	-	-
⑧중기기본인력계획 1.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	-	-	-	-	-
2.신규인력 증원분야와 감축분야 및 그내용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3.인건비 현황	-	-	-	-	-	-
4.민간위탁	점검서에 “실적 없음” 표시 (18.12.11, 19.12.2) 20년의 경우 행정 사무감사시 제출	기구정원운영현황 제출 제출(19. 1. 21. 18, 20.2.7, 21.1.13)	기구 정원운영현황 점검서에 “실적 없음” 표시 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구 정원운영현황 보고(18. 12. 26) 20년 행정사무감사 20.12.30	기구 정원운영현황 보고(19. 12. 16, 20.12.30)	-

구 분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③ 기준인간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미제출	미제출 (의원 요구자료)	미제출 (의원 요구자료)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체진단 자체진단 결과	미제출	미제출 (의원 요구자료)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미제출 (21.1월부터 20년 세계대학원도선수 권대회 사무처 설치)	미제출 (19.1기 업도시 지 원사업소 폐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미제출 (19.11월부터 운영중)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구 분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⑦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	-	-	-	-	-

⑧중기기본인력계획
 1.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2.신규인력 증원분야와
 감축분야 및 그내용
 3.인건비 현황
 4.민간위탁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점검서에 “실적 없음”
표시

점검서에 “실적 없음”
표시

의원요구자료
표시

점검서에 “실적 없음”
표시

점검서에 “실적 없음”
표시

점검서에 “실적 없음”
표시

구 분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제출	제출 (기구정원운영현황)	□제출	□제출	□제출
③ 기준인간비 대비 인간비 집행현황 (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제출	제출 (기구정원운영현황)	□제출	□제출	□제출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체진단 자체진단 결과	□제출	□제출	□제출 (행안부 진단결과 보고예정)	□제출	□제출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제출 (18.3월 한시기구 신설(19.2.28일까지))	□제출 해당없음 미래해양자원국	□제출 (18.10.19 : 18.6~19.6)	□제출 (진도항개발사업소 (흑산공항중심군개발단 : 17.1~18.12))	□제출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출 (20.4월부터 운영)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	-	-	-	

구 분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⑧ 중기기본인력 계획					
1.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2.신규인력 증원분야와 감축분야 및 그내용	▣ 제 출		▣ 제 출	▣ 제 출	▣ 제 출
3.인건비 현황					
4.민간위탁					
점검서에 “실적 없음” 표시	19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20.4.29) 20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21.3.19)	점검서에 “실적 없음” 표시	점검서에 “실적 없음” 표시	점검서에 “실적 없음” 표시	점검서에 “실적 없음” 표시